

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18. 5. 30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18년 5월 30일

2. 장 소 : 금융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

최 종 구 위 원 장

김 용 범 부위원장

송 준 상 위 원

이 성 호 위 원

윤 석 현 위 원

* 의결안건 제142호~제148호, 보고안건 제9호~제10호 참여

윤 면 식 위 원

곽 범 국 위 원

4. 회의경과

(14시 00분 개회)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1) 2018년도 제9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8년도 제10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

□ 2018년도 제9차 금융위 회의록과 2018년도 제10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
2) 의결안건 심의

□ 의결안건 제141호 『2017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송준상 상임위원이 내용을 설명함

○ (위원) 2016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심의 지적사항 중 미이행 지적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?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?

○ (보고자) 금융감독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음.

- (위원) 이행이 안 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며, 지적사항이 이행 안 되는 것은 왜 그런지?
- (보고자) 금융감독원에서 미이행 되는 사항은 두 가지임. 첫째는 직원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.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향후 노조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함.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의 청원휴가일수를 다른 공공기관의 예에 따라서 조정하라고 지적했는데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만 반영을 했고 열 가지 정도는 노조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됐음.
- (위원) 실무에서 어려운 것이 설명하신 것처럼 노조와 협의가 되어야 됨.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것을 이행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음.
- (위원) 금감원과 방안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람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*대로 의결함

*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(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)

※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입장함

□ 의결안건 제142호 『(주)다날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 , 제143호 『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·핀테크전략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44호 『엔에이치투자증권(주)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(위원) 자료를 보면 향후 재무상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,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달한다는 뜻인지?

○ (보고자) 그것은 아님. 새로운 업무를 부과했을 때 이 부분에서 적기시정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안이며, 지금 충분히 상회하고 있음.

○ (위원) 지난번 5개 금융투자회사가 단기금융업을 인가 신청했을 때 한국투자증권(주)만 했었고 NH투자증권(주)은 그때 안됐는데 지금하고 그때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?

○ (보고자) 17.11월 금융위의 초대형 IB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즈음에 17.10월경 농협금융지주 회장인 ○○○씨에 대한

검찰수사 부분이 있었고, 그 이후 농협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, 그 다음에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검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.

- (위원) 초대형 IB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해서 그것으로 벤처캐피탈이나 기업금융업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라든지,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. 그런데 단기금융업무니까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가지고 조달된 자금을 장기기업금융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항상 금융기관들이 자산의 운용과 부채의 기간 간에 만기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, 또 그게 계속 확대된다고 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음. 특히 이 건은 발행어음 조달을 CMA형 발행어음으로 했는데 CMA형 발행어음은 성격상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임. 그래서 업권간의 업무영역 문제도 있고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사이에 실제로 규제 차익이 있을 수 있음. 앞으로도 계속 다른 회사들도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을 수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항상 관리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.

-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45호 『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(주)와 한화자산운용(주)의 분할합병 승인안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(주)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46호 『수협은행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 , 제147호 『메트라이프생명보험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48호 『에이아이피자산운용(주)(舊에프지자산운용(주)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3) 보고안건 심의

- 보고안건 제9호 『옵티머스자산운용(주)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충족에 따른 처리방안 보고』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-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- ⇒ 원안대로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10호 『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('16.12말 기준) 관련 자료미제출 25개 금융회사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』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- (위원) 지금 이 법이 입법예고 중인지?

- (보고자) 입법예고 중이고,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에 있음.

- (위원)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사례의 유예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인지?

- (보고자) 2년마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.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은 16.12월말이고,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한번 정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음.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심사결과와 과태료 미부과 건도 함께 보고 드리겠음.

○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18년도 금융위원회 제10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.

(14시 30분 폐회)